

FSS/2206-01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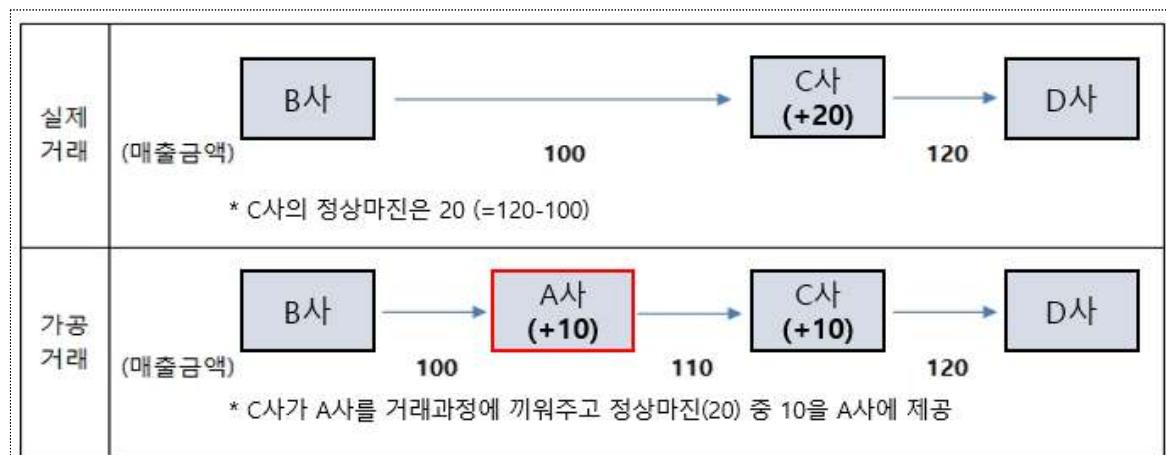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 결정일 : 2021년
- 회계결산일 : 2015.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보안솔루션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보안솔루션 매출 외에도 타사의 상품을 유통하면서 유통마진을 취하는 상품매출 거래 또한 영업으로 하고 있다. 회사는 보증기관 및 외부투자자들로부터의 유리한 평가를 받고 수주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의 이점을 노리고 가공의 매출을 계상하였다. 회사는 ’15년~’19년 기간 중 거래처들 간의 거래 단계에 끼어들기 방식으로 가공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하였다.

IT업계는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시스템공급이라는 형태로 일괄 납품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이러한 경우 최종 고객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매출·매입을 발생시키게 된다. 회사는 이러한 IT업계의 거래 특성을 이용하여 타 업체들간에 이미 확정된 매출거래 단계 가운데 별다른 역할 없이 끼어드는 방식으로 참여하여 가공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하였다. 가공매출을 통하여 발생한 마진(매출액 - 매입액)은 추후 해당 거래 소개업체들에 허위의 영업수수료를 계상하여 지급하거나, 회사 제품매출 거래단계에서 소개업체를 역으로 끼워주어 마진을 돌려 주기도 하였다. 회사는 가공매출 마진 관리를 위한 마진정리표를 작성하였으며, 내부의 결재문서를 통해 대표이사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었다.

회사의 가공거래 방식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5년부터 '19년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회사의 매출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거래처들간에 이미 확정된 매출·매입거래에 끼어들어 가공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하였다. 또한 가공매출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마진(매출액 - 매출원가)을 추후 소개업체에게 되돌려 주기로 했음에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1001호(재무제표 표시)에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 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히 표현해야 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舊수익)에 문단14에 따르면,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만 수익을 인식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거래단계에 별다른 역할 없이 끼어드는 방식으로 인식한 회사의 매출이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의 측면에서 수익인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매출액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미지급금 과소계상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를 공정하게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대표이사의 지시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공 매출 계상은 거래처와의 공모를 통해 형식적인 서류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감사 절차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특히 여러 거래단계를 거쳐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회사가 별다른 역할 없이 끼어들기 형식으로 가공의 매출의 계상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